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3. 3 개정)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3. 23 개정)

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마.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자.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 (2011/3/2 개정, 5/30 시행)

1) 개정목적

☐ 유동성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LP의 호가가격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주식LP의 매도·매수호가가격의 범위를 상대방 최우선호가까지 확대(20조의5)

— 주식LP의 매도·매수호가를 상대방 최우선호가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최우선호가에 이미 제출된 LP호가
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함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1/3/3 개정, 5/30 시행)

1) 개정목적

☐ 상대 최우선호가로 LP호가 제출 및 정정시 호가수량 상한을 신설하는 등 주식LP의 호가범위 확대에 따라 필
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2) 개정내용

- ☐ 단일가매매시 상대 예상 최우선호가로 LP 호가 제출 가능 여부를 명확화하게 규정(31조의6 1항 1호)
 -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타방의 예상 최우선호가에 유동성공급호가 이미 제출되어 있더라도 타방의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LP호가 제출을 허용
- ☐ 상대 최우선호가로 LP호가 제출시 호가수량 상한을 신설(31조의6 4항)
 - 이는 LP호가에 의한 스프레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
 - 주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타방 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제출하는 경우 타방 최우선호가의 호가수량 미만으로 제한
 - 타방 최우선호가의 호가수량 미만에 있어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 상대 최우선호가로 LP호가 정정시 호가수량 상한을 신설(31조의6 5항)
 - 주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타방 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정정하는 경우 타방 최우선호가의 호가수량 미만으로 제한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1/3/23 개정, 3/23 시행)

1) 개정목적

- ☐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진입 및 퇴출 기준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회원의 평가 및 지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소매채권시장의 유동성을 보완하고 소매채권전문딜러제도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취소 요건을 개선(63조)



- 소액채권전담위원의 지정취소에 있어 최근 2반기 합산 평가점수를 140점에서 150점미만인 경우로 변경
- 또한 소액채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

□ 국고채환매거래의 성립요건을 확대(76조)

- 국고채전문딜러의 환매채거래 요건을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이행을 위한 경우’에서 ‘국고채권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로 확대함
 - 이는 2011.3.1 기획재정부의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거래지침을 반영한 것임
- 본 개정 규정은 2011. 4. 11부터 시행(부칙 1조)

□ 소매채권시장 매매대상에 풋옵션부채권을 포함(99조의4)

- 옵션부 채권 가운데 채권자가 만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풋옵션부채권을 소매채권시장 매매대상에 포함
 - 이는 소매채권전문딜러의 시장조성기능을 통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본 개정 규정은 2011. 5. 2부터 시행(부칙 1조)

□ 소액채권전문딜러지정위원회의 위원 및 세부 운영방법을 개선(99조의10)

- 소액채권전문딜러지정위원회의 위원을 6일에서 4인으로 축소하면서 박사소지자에 대한 10년 이상 근무요건을 삭제하고, 거래소 및 협회 채권담당 부서장을 삭제함
- 또한 위원회 세부 운영방법을 거래소가 아닌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함

□ 소액채권전담위원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지정방법을 마련(별표 2의2)



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 (2011/3/2 개정, 3/7 시행)

1) 개정목적

-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공시제도를 마련하고 기업부실징후와 관련한 공시정보 확대 및 공시의무 강화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공시제도 마련

- 신성장동력기업이라 함은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을 의미(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조 31항)
- 신성장동력기업인 코스닥시장상장기업은 사업계획의 진척사항 및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세칙 사항을 신고(Milestone 공시)하여 함(6조 4항)
 - 단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우량기업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7조 1항 1호)에 속하게 된 경우 제외
 - 신규상장일, 반기·사업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신규상장일로부터 신규상장일이 속한 반기 말일 또는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반기부터 적용) 사업진행을 신고
 - 신고내용 중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공시 후 그 결과가 해당 예측 또는 전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제재하지 않을 수 있음(6조 5항)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기업설명회(IR) 개최 결과를 세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개최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43조 5항)
 - 신성장동력기업은 상장일부터 3년간 반기별로 1회 이상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6조의2)

□ 기업부실징후와 관련한 공시정보 확대 및 공시의무 강화

-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연계된 회사자금의 유출관련 공시의무 및 선급금 지급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 최근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해당 코스닥상장법인의 신주 취득자에 대한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의미)에 관한 결정 혹은 자기자본의 10%(대기업의 경우 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6조 1항 2호 나목 (6))
- 최근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해당 코스닥상장법인의 신주 취득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 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자기자본의 10%(대기업의 경우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 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단 종업원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제외(6조 1항 2호 다목 (5))
- 자기자본 50% 이상의 대손발생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6조 1항 2호 라목 (8))
 -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채권별 손상차손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누계금액 기준)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인 사실을 확인한 때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와 관련한 공시의무 신설(6조 1항 2호 마목 (1) (라))
 - 외감법 제2조의2 · 제2조의3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 검토와 관련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하는 때
-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관련 공시의무 신설(6조 1항 3호 가목 (9))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 포함) 등을 체결하거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때
- 기업부실 가능성이 높은 타법인 출자,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선급금 지급 및 대손발생의 경우 상대방 정보에 대해 공시하도록 공시정보범위를 확대(6조 1항 2호 나목 (6), 6조 1항 2호 다목 (4), 6조 1항 2호 다목 (5), 6조 1항 2호 라목 (8))
 - 자기자본의 10%(대기업의 경우 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선급금 지급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인 경우 손상차손 대상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거래소의 시장안내 사항으로 소속부 지정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를 신설(40조 1항 1호 2호)



마.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1/3/4 개정, 3/7 시행)

1) 개정목적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2011. 3. 2)에 따라 관련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기업부실 가능성이 높은 타법인 출자,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선급금 지급 및 대손발생의 경우 공시하여야 하는 상대방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6조의2)
 -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최대주주·대표이사 현황,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재무상황, 휴·폐업 여부 등을 포함한다)
 -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임원과의 관계
 -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영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 인한 것은 제외)
 -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변경 후 최대주주 정보 등에 대한 신고 사항을 추가(7조)
 - 변경 후 최대주주다 법인인 경우 정상적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재무상황, 휴·폐업 여부를 신고 사항으로 정함
 - 또한 실권주의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가 된 경우 인수한 주식수, 인수금액, 실권주 처리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 사항으로 추가
- 신성장동력기업의 사업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마련(7조의2)
 - 사업계획의 내용 : 사업계획의 개요, 전제조건, 반기별 달성목표, 투자계획, 관련 조직체계 등
 - 사업계획의 진척상황 : 반기별 달성율, 달성·미달성 요인 등



- 사업계획에 따른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 : 향후 3사업연도(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 포함)의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
-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성장동력기업의 기업설명회 개최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마련(20조의2)

- 기업설명회에서 제공한 자료의 내용, 거래소 또는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한 기업설명회 개최의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의미

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2011/3/2 개정, 3/7 시행)

1) 개정목적

- ☐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해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하여 소속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 ☐ 또한 투기환기종목 지정제도를 마련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신성장동력기업의 정의(2조 31항)

- 신성장동력기업이라 함은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세척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을 의미

☐ 신성장동력기업 상장요건에 대한 특례 마련(7조 2항)

-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경영성과(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이익규모등(ROE 5% 또는 당기순이익 10억원 등) 요건의 적용을 면제
 - 이는 이전 성장형벤처기업에 대한 상장특례를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특례로 전환한 것임



□ 신성장동력기업과 SPAC간 합병요건 신설(19조의4 3항)

- SPAC의 합병대상법인인 비상장법인등을 일반, 벤처, 신성장동력기업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게 요건 적용하도록 하면서 신성장동력기업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합병상장시 신성장동력기업의 신규상장 요건 적용하도록 함

□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보호예수제도를 개선(21조 1항 1호 3호)

- 신성장동력기업 최대주주등의 보호예수기간 확대로 책임경영 강화
 - 신규상장시 최근 1년내 자본금대비 100% 초과시 유상증자초과분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벤처금융의 참여를 유도
 - 이는 상장이후 벤처자금의 회수기간을 단축시켜줌으로써 투자인센티브 부여하기 위함
- 신성장동력기업의 상장요건중 유상증자 초과분 보호예수기간 완화
 - 진입특례에 따른 최대주주등 보호예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기업설명회(IR) 개최 의무 신설(26조의2)

- 상장일부터 3년간 반기별로 1회이상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 다만,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반기말까지의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반기부터 적용

□ 신성장동력기업 관리종목 지정시 특례 마련

- 신성장동력기업의 상장이후 매출액요건 적용유예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28조 1항 2호)
 - 이전 성장형 벤처기업의 경우 상장이후 2년간만 적용 유예하였던 매출액요건(30억원미만)을 3년으로 확대
- 신성장동력기업의 대규모경상손실요건 적용을 3년간 유예(28조 1항 3호)하고 신성장동력기업의 4연속 영업손실요건 면제(28조 1항 3호의2)
 - 대규모경상손실이란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 손실 발생을 의미
 - 이전 성장형 벤처기업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 요건에 대해서만 적용을 면제하였음



□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신설(28조 1항 3호 15의3 · 15의4)

- 상장 이후 매반기별 사업진행공시 및 기업설명회 미개최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데 이는 상장후 3년간 적용함(28조 1항 15호의3)
 - 상장일로부터 반기말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반기부터 적용
- 사업진행공시 및 기업설명회 미이행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후 다음 반기 연속 미이행시 상장폐지(28조 1항 15호의4)

□ 소속부 운영 및 지정 근거 신설(27조 1항)

- 종전 업무규정상 소속부제도를 이관하여 상장법인의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업종 등 기업특성 및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신성장기업부, 중견기업부 등으로 소속부를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 상장법인에 외국기업, 투자회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제외
- 우량기업부 :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세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시장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세척에서 정하는 지수산출 대상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벤처기업부 : 기술력 ·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세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세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거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신성장기업부 : 신성장동력기업
- 중견기업부 :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세척에서 정하는 신규상장 또는 재상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소속부 지정방법, 지정시기 등 절차근거 마련(27조 2항~4항)

- 소속부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매년 5월 최초매매일에 지정 또는 변경
- 소속부의 변경을 유발하는 자격요건 변동 등(소속부 요건관련 인증의 취득 · 만료, 관리종목 지정 등) 세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수시로 소속부를 심사하고 변경할 수 있음
-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세척에 위임



□ 부실이 우려되는 상장법인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환기종목제도 신설 및 지정근거 마련(8조의2 1항)

- 관리종목 내지 상장폐지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 위험징후 기업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
 - 투자주의 환기종목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보호예수 위반시, 실질적 자금조달효과가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등도 포함
- 상장법인의 재무상태, 투명성, 안정성 등 기업부실요인 등을 고려하되 세부 지정기준은 세칙에 위임

□ 투자환기종목 지정방법 및 절차 등 근거 마련(28조의2 2항~4항)

- 소속부 지정과 동일하게 매년 정기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항 발생시 수시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 매년도 정기심사는 소속부 지정시 제외되므로 소속부 지정 기준일(5월 최초매매일) 이전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 지정·해제 절차 등 세부기준을 세칙에 위임

□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

- 대규모 영업외 대손 발생시(38조 2항 5호 바목)
 -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대규모(자기자본의 50%이상 등 구체적 기준은 세칙에 위임)의 손상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 부실징후기업의 실질적 경영권 변동시(38조 2항 5호 사목)
 - 관리종목(비부실요건에 의한 경우 제외)·투자주의환기종목의 실질적 경영권(최대주주변경, 경영권 양도계약체결, 경영지배인 선임 등)이 변동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 부실징후기업의 편법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38조 2항 5호 아목)
 - 퇴출 회피목적으로 관리·투자주의환기종목 기업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후 일정기간 이내 당해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대여·출자 등)하는 경우



-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리 강화를 위해 신주상장 신청시 자금사용내역 제출의무 신설하고 보호예수 의무 강화
 -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상장 신청서 제출시 자금사용내역 제출 의무 부과하고 미이행시 신주상장을 유예하도록 함(18조 6항 4호)
 - 제3자배정 유상증자(실권주 처리에 의한 최대주주 변경의 경우 포함)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시 보호예수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확대(23조 1호)
 -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 부과(23조 2호)
 - 실질적 자금조달효과가 없는 제3자배정 신주상장전에 유상증자 대금이 신주인수인에게 편법 상환 또는 지급(대여금, 출자 등)되는 경우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 부과(6월)

- 지주회사의 진입 및 퇴출 요건을 정비(2조 21항, 6조 1항 6호, 28조 1항 3호의2)
 - 지주회사 정의 신설(2조 2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 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로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의미
 - 지주회사의 매출액 · 영업손실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도록 함(6조 1항 6호, 28조 1항 3호의2)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1/3/4 개정, 3/7 시행)

1) 개정목적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개정(2011. 3. 2)됨에 따라 관련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신성장동력기업 업종 및 범위 명확화(2조 5항 6항)
 - 신성장동력산업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기술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벤처기업으로 한정
 - 녹색인증기업도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



□ 신성장동력기업의 추가 제출서류 신설(3조 2항 13호)

- 신성장동력기업의 신규상장시, 사업진행공시 관련 서류 및 상장주선인의 시장성 의견서 제출 의무 부과

□ 신성장동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해제시기 등 정비(26조 1항 2호·15호의3·15호의4)

- 신성장기업부에 소속된 경우에 한하여 신성장동력기업의 관리종목 유예요건(영업손실 등) 적용 명확화
- 사업진행공시 및 기업설명회 개최의무 위반 관련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 마련
 - 지정시기는 제출·개최기한 익일, 해제시기는 사유해소 확인일 익일

□ 각 소속부별 지정요건 명확화(24조)

- 우량기업부의 정기심사 및 수시변경 요건 마련
 - 정기심사요건은 기업규모 최근년도 자기자본 700억원 이상 이거나 최근 6월간 시가총액 평균이 1,000억원 이상, 재무요건 최근년도 자본잠식 없고, 최근 3년간 평균 ROE 5% 이상 또는 평균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500억원 이상
 - 수시변경요건은 프리미어 지수 해당 구성 종목
- 벤처기업부의 정기심사 및 수시변경 요건 마련
 - 정기심사요건은 기업규모 최근년도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이거나 최근 6월간 시가총액 평균이 500억원 이상, 재무요건 최근년도 자본잠식 없고, 최근 3년중 2년이상 순이익 실현, 성장성 최근 2년간 각각 직전사업연도대비 평균 매출액증가율이 20% 이상, 연구개발비 비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
 - 수시변경요건은 녹색인증 또는 이노비즈인증을 취득한 벤처기업, 히든챔피언 선정기업 등
- 중견기업부의 경우 신규상장법인 등의 적용 범위를 명확화
 - 신규상장법인 등의 적용 범위는 최초 정기심사기준일(6월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정기심사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은 신규상장 또는 재상장법인의 경우

□ 소속부 심사 및 변경기준 등 세부사항 명시(25조)

- 소속부 수시변경 사항 및 지정시기 등 정비



- 소속부 수시변경 사항은 프리미어 지수 편입·탈퇴, 녹색인증 또는 이노비즈인증 신규·만료, 히든챔피언 선정·해제,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해제 등
- 정기 또는 수시요건에 따라 2개 이상의 소속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순으로 우선 지정
- 신성장기업부 소속 기업의 경우 3년 이후 우량기업부에 한하여 변경가능하되, 최초 변경 이후 신성장기업부로 재변경은 불가

□ 정기심사에 의한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마련(28조 1항)

-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산출 방식을 명시
 -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산출 방식이란 계량적·비계량적 변수의 가중치 부여를 통한 가중평균부실확률 산출 및 부실점수산출 등을 통하여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별표3)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 명확화(28조 3항)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별 지정시기 등 명확히 함
 - 정기심사를 통한 지정시는 5월 최초 매매일
 - 내부회계관리제도위반, 편법적 제3자배정, 보호예수위반시는 사유 확인일의 익일

□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제출서류 추가(18조 1항 7호)

-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자금사용내역·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의무 신설
 - 단, 우량기업부에 속한 상장법인의 경우 제출 면제

□ 실권주 처리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개념 명확화(21조의5)

- 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 증자시 청약·납입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실권주 처리의 경우도 제3자배정 증자의 범위에 포함

□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명확화(33조 11항)



- 실질심사대상이 되는 횡령·배임 규모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임원 3% 또는 10억원 이상, 직원 5%) 이상인 경우로 명확화
-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회계처리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실질심사대상 사유로 신설
- 주된 영업의 정지기준에 분·반기 매출액 기준요건(최근 분기 3억원 미만 또는 최근 반기 7억원 미만) 신설
 - 금융 및 보험업 영위기업은 미적용
- 대규모 손상차손 규모를 자기자본대비 50% 이상으로 명확화
- 경영권 변동사실의 구체적 해당 사항을 명시
 - 경영권 변동사실의 구체적 해당 사항이란 공시를 통하여 최대주주 변경사실, 주식 양수도 계약 또는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등이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

☐ 기타 관련 세부서식 등 정비

- 별표 2(신성장동력산업 업종), 별표3(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신설
- 상장서식 36(신성장동력기업 시장성 의견서) 및 상장서식 37(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자금사용 내역 확인서) 신설 등

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 (2011/3/2 개정, 3/7 시행)

1) 개정목적

- ☐ 유동성공급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범위를 확대하고, 소속부 설치 규정이 상장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변경(12조의5 1항)

- 회원이 사전에 설정한 별도의 계좌로 주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시(호가 정정 포함) 가격의 범위를 확대함



- 매도호가의 하한을 당해 종목의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에서 해당 종목의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변경
- 매수호가의 상한을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에서 해당 종목의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변경
- 단 상대방 최우선평가에 유기제출된 유동성공급호가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최우선평가로의 제출은 금지됨
- 본 개정 규정은 5월 30일부터 시행(부칙)

☐ 소속부 구분 운영 근거를 삭제(4조 1항)

- 소속부 설치 근거가 상장규정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

자.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1/3/3 개정, 5/2 시행)

1) 개정목적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 개정(2011. 3. 2)됨에 따라 관련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범위를 개선(12조의6)

- 유동성공급호가를 상대방 최우선매도·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호가의무수량과 상대방 최우선매도·매수 호가의 합계수량 사이에서 제출하도록 함
- 단일가매매시간 등에 있어서의 호가제출범위 관련한 조문을 정비
- 본 개정규정은 5월 30일부터 효력 발생(부칙)

☐ 소속부 구분 관련 규정 삭제(3조)

- 소속부 근거의 상장규정 이관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1/3/23 개정, 4/4 시행)

1) 개정목적

- ☐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고려하여 금선물 및 미니금선물의 증거금률을 인하하고 돈육선물의 증거금률을 인상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 금선물거래, 미니금선물거래, 돈육선물거래의 증거금률을 변경(별표 19)
 - 최근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성이 안정되고 있는 금선물 및 미니금선물의 증거금률을 인하하고 가격변동성이 급등한 돈육선물의 경우 인상함
 - 시행일 직전거래일의 정규거래시간이 종료된 때에는 변경된 증거금률을 적용하도록 함(부칙 2조)

〈 증거금률 변경사항 〉

구분	품목	현 행		조 정		조정폭(%p.)	
		거래 증거금률	위탁 증거금률	거래 증거금률	위탁 증거금률	거래 증거금률	위탁 증거금률
인하	금선물	6%	9%	5%	7.5%	↓1.0	↓1.5
	미니금선물	6%	9%	5%	7.5%	↓1.0	↓1.5
인상	돈육선물	12%	18%	14%	21%	↓2.0	↓3.0

연구원 김수연 (02-3771-0673, portia725@kcmi.re.kr)